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6. 1. 18.(월) 15:13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5시 13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천지현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천지현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 국민의례

○ 천지현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6년도 제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1차, 제2차 회의록과 속기록은 속기록 작성 및 위원님 확인이 끝난 후 다음 회의에서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보고안전>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전을 공개로 상정하는데 위원님들이 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보고사항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사항 중 순수외주제작 비율을 완화하고, 가상광고 허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과 사항입니다. 작년 7월 20일 가상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방송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에 오락, 스포츠보도에서 가상광고 상품 언급 등의 제한 관련 해석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7일에 순수외주제작 관련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때는 40%를 입법예고 했었는데 이때 저희 논의 과정에서 외주제작사에게 간접광고 허용 관련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에 편성비율 재조정을 고려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입법예고 후에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가 사전협의하는 과정에서 순수외주비율을 40%에서 35%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변경에 해당되므로 재입법예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서 순수외주비율을 그대로 40%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규제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8일에 외주제작사에게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런 경과를 반영해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8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방송사업자의 특수 관계자가 제작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제한 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순수외주제작 편성비율을 ‘35% 이내’로 완화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안과 재입법예고안은 비교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59조의2제4항 가상광고의 방법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2제4항제4호 나목은 오락, 스포츠, 보도 프로그램에서 가상광고 자체를 통한 광고효과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상 혼동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락, 스포츠, 보도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직접적인 가상광고 상품을 언급하거나 구매·이용을 권유하는 것으로 제한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제4호 나목에서 ‘해당 방송프로그램에서’로 되어 있는 사항을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가 가상광고를 하는 상품 등을 언급하거나 구매·이용을 권유하지 아니할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위원회에서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입법예고를 거쳐 3월까지 자체 및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40% 편성비율 관련해서 재입법예고를 하는 이유를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원래 40% 이내로 되어 있었고, 그중 특수 관계자의 비율이 21%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수 관계자 비율이 21%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 특수 관계자 비율이 폐지가 됨에 따라 결국에는 이 40%도 실질적으로는 일정 비율 줄어들어야 하는 것인데 지난번 입법예고를 할 당시에는 외주제작사에게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이라든지 또는 외주제작사를 방송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그런 방송법 개정안 등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었고, 그에 따라서 외주제작사 쪽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면도 있어서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일단 40%로 하되, 방송법 개정 상황, 기타 관련 기관이나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의견을 참작해서 재조정하자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하신 것처럼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그다음에 법제처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특수 관계자 비율이 폐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럼 40%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강한 규제가 된다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다시 재입법예고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상광고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상광고는 프로그램 안에 들어 있긴 하지만 가상광고 그 자체만을 볼 때에는 광고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품을 언급하고 구매·이용을 권유하는 문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법 시행령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면이 있어서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가상광고 자체의 문언으로 상품을 언급하거나 구매·이용을 권유하는 것은 간접광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출연자가 직접 상품을 언급하거나 구매·이용을 권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시행령의 규정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설명한 것이 맞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맞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59조의2 입법예고안에 보면 ‘출연자가’ 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개정내용에서 말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한다고 하는데 현행 규정도 입법예고안과 똑같이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규정을 보니까 방송법 정의규정의 방송광고, 그 다음에 가상광고 이렇게 다 봐도 언급이라든가 권유라든가 이것은 출연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당연히

이야기하는 것이지, 출연자가 아닌 광고내용에 그것이(...), 그렇게는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 규정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저희가 작년 7월에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이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개정했는데 해석상 사업자 간에, 또 방송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7.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회의는 1월 22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2016년 제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5시 23분 폐회 】